

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02. 28(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2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23(수)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3.23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건설과장 석명준)

가. 제안이유

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」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재난예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- 건축물, 교량·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-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-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-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
-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
-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자문단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. 단, 평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·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.
- 자문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 -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·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
 -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써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먼저 자문단의 기능은 군의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비롯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, 안전대책,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, 안전관련 행사의 자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
 -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,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, 자문단회의 등 운영 규정과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, 의견청취,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등 자문단의 주요 활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는 내용상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재난 재해관련 민간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
-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